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 의 재)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

나. 주요골자

-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이 사회교육에 직접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 면제
 -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연수원
 -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교육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 1991년 11월 30일 개정공포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4410호)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본 감면조례 제2조 제5호의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개정하였고
- 1991년 12월 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에 의하여 현행 시·군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사회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